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74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권칠승·박용갑·박 정

서미화 · 문금주 · 전진숙

송옥주 · 민병덕 · 윤종군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12월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벤처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금융비용 부담 완화(35%)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(32%)인 것으로 나타남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, 특히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%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,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1항 및 제16조의20

신설).

법률 제 호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"고성장벤처기업"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,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직전 3개 연도 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20 이 상인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 한다.

제2장제3절에 제16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20(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성 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 지원
 - 2. 고성장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
 - 3. 고성장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
 - 4. 그 밖에 고성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~ ⑩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~ ⑩ (현행과 같
<신 설>	음) ① "고성장벤처기업"이란 상시
<u>\ </u>	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, 매
	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직
	전 3개 연도 평균 증가율이 <u>10</u>
	0분의 20 이상인 벤처기업으로
	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	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0(고성장벤처기업에 대
	한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
	은 고성장벤처기업의 육성을
	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 1.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융자
	및 투자 등 지원
	2. 고성장벤처기업의 연구개발
	<u>지원</u>
	3. 고성장벤처기업의 수출 및
	해외진출 지원
	4. 그 밖에 고성장벤처기업의
	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